

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& WELFARE	보도자료	배 포 일	4월17일	매 수	총1매
		보도일시	4월 18일(수) 조간		
	기초생활 보장팀	팀 장	정경실	전 화	02)2110-6224 지역번호 없이 129
		사 무 관	이현주	E-Mail	hisj5y@mohw.go.kr
	근로연계 복지팀	팀 장	김영선	전 화	02)2110-6240
		사 무 관	홍승령	E-Mail	hong516@mohw.go.kr

올해 7월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해 장제비 지원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-

〈주요내용〉

- ☐ 올해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가 지원되며 자산형성지원, 소액신용대출 등 저소득층이 자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각종 지원의 세부방안이 마련된다.
- ☐ 보건복지부(장관 유시민)는 오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과 절차, 창업지원 및 자산형성지원, 중앙자활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.
※ 입법예고기간 : 2007. 4. 18~5. 8
- ☐ 이는 지난해 12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서
 - 개정법이 시행되면 현재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비를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.
※ 장제비 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(40~50만원) 및 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한 장제비(25만원)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
 - 또한, 미국·영국 등 선진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산형성 지원을 도입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미래를 대비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.
 - 아울러, 담보나 보증보다 자활의지 등을 우선 고려하는 소액 신용대출(마이크로크레딧)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☐ 보건복지부는 내달 8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.

※ 【붙임】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- 조건부수급자가 취업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(안 제11조)
-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함(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)
- 자금 대여의 범위를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,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로 확대하고 소액신용대출(마이크로크레딧) 등 자금 대여의 방식을 구체화함(안 제17조)
-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창업지원의 내용을 창업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의 수립, 기능훈련·제품개발 등의 지도, 경영관련교육 등의 제공으로 함(안 제21조)
- 자산형성지원의 내용을 저축금액에 상응한 자금의 지원과 경제·금융 등 필요한 교육의 제공으로 하고 자산형성의 목적을 주택구입·임대, 교육·기술훈련 등으로 한정함(안 제21조의2)
- 중앙자활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임원, 정관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(안 제26조 및 제26조의2)
-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융자, 국·공유지 우선 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의3)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-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저축한 금액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하되 저축을 해지하였을 때는 소득환산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인정(안 제4조)
- 월세임차료는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비중,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도 월세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함(안 제9조 및 제11조)
- 해산급여 신청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출생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
- 급여신청 또는 변경신청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를 첨부하도록 함(안 제34조)